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발행일 2018. 9. 27.

##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 (2017년~2018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자체감사 실태 및 부정사용 적발 현황,  
증빙서류 제출 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 목차

---

|                                                      |           |
|------------------------------------------------------|-----------|
| <b>목차</b>                                            | <b>2</b>  |
| <b>특수활동비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현황</b>                          | <b>5</b>  |
| 1. 2018년 특수활동비 편성 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공개청구 결과        | 5         |
| 2. 2018년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              | 5         |
| <b>특수활동비 자체감사 및 부정사용 적발 현황</b>                       | <b>8</b>  |
| 1. 2017년~2018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자료 정보공개청구 결과           | 8         |
| 2. 2017년~2018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의 자체감사 현황              | 9         |
| <b>특수활동비 증빙현황</b>                                    | <b>10</b> |
| 1. 2017년~2018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집행 후 증빙서류 제출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 10        |
| 2. 2017년~2018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현황                     | 11        |
| <b>특수활동비 집행 관리·감독 정보 비공개 기관</b>                      | <b>14</b> |
| 1.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자체 감사 여부, 증빙 현황 등 주요 비공개 현황   | 14        |
| 2.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자체 감사, 증빙 현황 등 정보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 | 17        |
| <b>평가</b>                                            | <b>19</b> |
| <b>별첨 (기획재정부, 감사원 지침)</b>                            | <b>21</b> |

# 조사배경 및 개요

## 1. 조사배경

-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급되며,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구체적인 집행사유, 날짜, 지급상대방 등을 밝히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예외규정이 특수활동비 집행의 원칙처럼 관례화됨에 따라 목적 외 유용, 사적 편취 의혹 등 문제가 발생해 왔음.
- 최근 국회가 특수활동비 예산을 대폭 감축하기로 결정했고, 그 외 국가기관과 정부부처 역시 특수활동비 예산이 삭감된 2019년 예산안을 제출함. 그러나 특수활동비 감축만큼이나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함.
- 감사원은 2017년 8월 28일에 발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이하 감사원 점검) 결과,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 특수활동비 현금재지급에 대한 관리 개선, ▲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허용 최소화 등을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에 권고함. 이외에도 감사원은 향후 매년 부처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적발 시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계획임을 밝힘.
- 감사원의 2017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이후,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기재부 지침)<sup>1</sup>에는 기존에 명시되어 있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수립’ 외에도 ‘특수활동비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매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요구 시 감사원 점검 결과 제출’ 등 특수활동비 집행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됨. 2017년 11월에 개정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이하 감사원 지침) 또한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해 사용할 때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됨.
- 참여연대는 지난해에 2012년~2016년 5년간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의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및 부정사용 적발 현황, 특수활동비 집행 후 증빙현황 등 실태를 파악한 바 있음. 지난해에 이어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20개 기관이 2017년 있었던 감사원 권고와 기재부·감사원의 개정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다시 실태 점검함.

<sup>1</sup>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 제44조와 국가재정법 제80조에 근거해 작성됨.

## 2. 조사대상 기관

- 특수활동비를 편성받아 사용하는 20개 기관
  - 대통령, 행정부 소속 기관·부처(18개 기관)
    - 감사원,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 국회
  - 대법원

## 3. 조사목록

- 2018년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내용
- 2017년~2018년 상반기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 실태 및 감사결과 부정사용 적발현황
- 2017년~2018년 상반기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후 증빙서류 제출 현황
  - ※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및 증빙서류 제출 현황에서 2018년 상반기는 6월을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기관(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은 7월 및 8월 현황이 포함됨.

#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현황

## 1. 2018년 특수활동비 편성 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공개청구 결과

- 2018년도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편성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범위, 집행승인절차, 집행방식, 증빙방법 등 집행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함.
- 감사원은 2017년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 후 ‘특수활동비 사용계획을 사전 심사하거나 활동결과를 사후제출하는 부처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자체 지침이나 집행계획을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각 기관에 권고함<sup>2</sup>.
- 2018년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각 기관의 공개 여부는 아래와 같음.
  -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공개(8곳)
    - 경찰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거래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세청,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 자체 지침, 집행계획 모두 비공개(12곳)
    -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방위사업청,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 2. 2018년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

-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된 8개 기관의 2018년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2017년 감사원의 점검 및 2018년 기재부 지침 개정 내용이 각 기관의 내부 지침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 확인됨.
-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공개한 8개 기관 중 관세청, 국방부, 국세청 등 3개 기관은 특수활동비 집행 전 사용계획 제출 및 심사, 활동결과 제출을 모두 의무화하는 내용을 2018년 지침·집행계획에 포함시킴. 경찰청은 특수활동비의 현금사용을 최소화하기

<sup>2</sup> 감사원(2017.8.29.), “[보도자료] 감사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위해 개인별로 먼저 사용한 후, 영수증·지출보고서 제출 및 심사를 거쳐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자체 지침에 규정함. 그리고 공정거래위는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법원은 사용계획 사전 제출·심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에 추가함.

-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중 선(善) 사례로 꼽을만한 기관으로는 관세청, 경찰청이 있음. 관세청의 경우, 기관의 '특수활동비 운영지침'에서 특수활동비 지급을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명시함. 경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 심사, 활동결과 보고 제출 외에도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국·관이 반기별로 집행 실태를 점검하도록 지침에 규정함.
- 그러나 감사원 권고 및 기재부 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 국무조정실 등 2개 기관은 사용계획을 제출해 심사하게 하고, 집행 후 활동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을 자체지침 또는 집행계획에 명시하지 않아 기존의 지침에서 개선되지 않음.

[표1]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받은 기관 중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공개한 기관 현황

| No. | 기관                        | 사용<br>계획<br>제출            | 사전<br>심사/<br>결재 | 집행<br>후<br>기록/<br>보고 | 주요내용                                                                                                                                                                                                            |
|-----|---------------------------|---------------------------|-----------------|----------------------|-----------------------------------------------------------------------------------------------------------------------------------------------------------------------------------------------------------------|
| 1   | 경찰청                       | -<br>(선<br>지출<br>후<br>지급) | ○               | ○                    | - 지급방식 및 결재 절차 기재<br>- 개인별 선 사용 후 영수증을 첨부해 지출보고서 작성하고, 결재 및 심사절차를 거쳐 개인별 계좌에 지급<br>-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시 소속 과장 확인·결재<br>-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국(관)별 세부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수립.<br>- 반기별 집행실태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br><br>*정보비 지출은 지침의 대상에서 제외 |
| 2   | 관세청                       | ○                         | ○               | ○                    | - 지급목적, 지급기준, 지급신청 시 제출 서류, 지급 결재 절차 등 기재<br>- 특수조사활동비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함.<br>- 집행 내역을 "특수조사활동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
| 3   | 공정거래<br>위원회               | X                         | X               | ○                    | -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직급별 지급금액, 사용처 범위 등 기재<br>- 각 반(과) 단위 또는 개인별로 <활동실적보고서>를 취합해 운영지원과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함.<br>-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시 차상급자 확인을 받은 사용내역서 제출하도록 함.                                                                   |
| 4   | 국무조정<br>실<br>·국무총리<br>비서실 | X                         | X               | X                    |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금액 및 편성 목적 기술됨.<br>-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한다고 표기됨.                                                                                                                               |

|   |                    |   |   |   |                                                                                                                                    |
|---|--------------------|---|---|---|------------------------------------------------------------------------------------------------------------------------------------|
| 5 | 국방부                | O | O | O | - 집행계획 작성 및 사전결재를 득하도록 명시<br>- 정부구매카드를 통한 집행 원칙, 현금사용 자제<br>- 결과보고서 작성해 기관장 결재<br>- 자체감사담당관의 영수증-집행내용확인서 금액 일치여부 검사                |
| 6 | 국세청                | O | O | O | - 특수활동비 집행은 역외탈세 대응/조사국 두 개의 업무로 구분해 관리<br>- 지급목적 별 유형 표기, 지급의뢰서 제출 및 지급승인 등 지급 절차 등 기재<br>- 수시점검(역외탈세), 매년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보고서 작성(조사국) |
| 7 | 대법원                | O | O | X | - 특수활동비 집행 용도 범위 간략 기재.<br>- 특수활동비 지급 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기획조정실의 사전승인을 받게하고 재무담당관을 통해 지급받도록 절차를 기재함.<br>- 중빙방법은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과 동일           |
| 8 | 민주평화<br>통일자문<br>회의 | X | X | X | -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 지침과 동일<br>- 집행계획에 예산액, 예산용도, 집행방법 등 기재<br>- 중빙은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에 따름                                                     |

-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비공개한 12개 기관 중 과학기술부, 국민권익위,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은 지침이나 집행계획 자체는 공개할 수가 없으나 해당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밝힘.
- 반면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경호처,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등 7개 기관은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이 마련되어 시행되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음.

[표2]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받은 기관 중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비공개했으나 수립 여부를 밝힌 기관과 밝히지 않은 기관 구분

| 구분                                      | 기관명                                     |
|-----------------------------------------|-----------------------------------------|
|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기관(5개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해양경찰청  |
|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히지 않은 기관(7개 기관) |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경호처,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

#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및 부정사용 적발 현황

## 1. 2017년~2018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자료 정보공개청구 결과

- 감사원은 2017년 특수활동비 점검결과에서 매년 부처별로 특수활동비 자체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 점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그러나 감사원이 모든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기에는 시간적·인력적 한계가 있고, 감사원의 점검 자체도 연 1회에 국한됨. 따라서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를 통한 점검을 통해 부정사용 여부에 대한 내부감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에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2018년 상반기 동안의 자체감사 계획서, 감사 결과보고서, 감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사용 적발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이 중 감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는 공개한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음.
- 다만 특수활동비 자체점검 여부에 대해서는 다수의 기관들이 답변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특수활동비를 편성받는 각 기관의 자체감사 실시 현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함.
  - 자체감사 여부에 대해 응답 하지 않아, 확인 불가 기관(5개)  
- 국가정보원, 국회,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방위사업청
  -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9개)  
- 공정거래위,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국방부, 국세청,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통, 외교부
  -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6개)  
- 감사원, 경찰청, 과학기술부, 법무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표3] 2018년 특수활동비를 편성받은 기관의 2017년~2018년 상반기 자체감사 실시 현황

| 구분          | 기관수 | 기관명                                                                     |
|-------------|-----|-------------------------------------------------------------------------|
| 자체감사 여부 비공개 | 5개  | 국가정보원, 국회,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방위사업청                                           |
| 자체감사 미진행    | 9개  |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
| 자체감사 진행     | 6개  | 감사원,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

## 2. 2017년~2018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의 자체감사 현황

- 기관 자체 감사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한다고 밝힌 기관 6곳 중 특수활동비 집행 점검만을 목적으로 별도의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기관은 감사원, 과학기술부, 법무부, 통일부 등 4곳이었음. 특히 감사원은 모든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할 때 감사원 자체의 집행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고 밝힘.
-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기관 내부의 종합감사 중 일부로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고 밝힘.

[표4] 2018년 특수활동비를 편성받은 기관 중 2017년~2018년 상반기 동안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고 답변한 기관

| No. | 기관        | 감사 형태                             | 비고          |
|-----|-----------|-----------------------------------|-------------|
| 1   | 경찰청       | 기관 종합감사                           | 부정 적발 사례 없음 |
| 2   | 감사원       | 감사원 재무감사<br>(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기관 점검 일환) | 부정 적발 사례 없음 |
|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             |
| 4   | 법무부       |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             |
| 5   | 통일부       |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             |
| 6   | 해양경찰청     | 기관 종합감사                           | 부정 적발 사례 없음 |

-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2017년~2018년 상반기 기간 동안 종합감사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한 결과를 밝힘. 감사원도 같은 기간 동안 감사원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집행 적발 현황을 밝힘. 세 기관 모두 2017년~2018년 상반기 동안 특수활동비 부정집행으로 적발된 사항이 없었다고 답변함.

## 특수활동비 증빙현황

### 1. 2017년~2018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집행 후 증빙서류 제출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 감사원 지침에 따르면,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특수활동비라도 집행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기본 원칙임. 현금으로 미리 지급된 특수활동비 중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상대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영수증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 특수활동비 집행 후 미증빙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사항이나,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관행화돼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어왔으므로, 2017년 11월에 개정된 감사원 지침에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에도 생략 요건과 절차를 정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여연대는 감사원 지침을 참고해 특수활동비 집행방식을 ① 신용카드,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와 ②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로 나누어, 특수활동비 사용계획서 제출 건수, 증빙서류 제출 건수 및 금액, 집행내용확인서 제출 건수 및 금액을 정보공개청구해 확인함.
- 특수활동비 편성 기관 중 2017년~2018년 상반기 동안의 증빙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경찰청, 관세청, 국방부, 대법원, 민주평통, 외교부, 해양경찰청 등 7곳이었고, 국무조정실은 특수활동비 집행액 및 영수증 증빙된 금액만 간략하게 공개함.
- 특수활동비 편성 기관 중 2017년~2018년 상반기 동안의 증빙현황을 비공개한 기관은 감사원, 공정거래위,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등 12개 기관이었음.

[표5] 2017년~2018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증빙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각 기관의 답변 결과

| 구분   | 기관수 | 기관명                                                                               |
|------|-----|-----------------------------------------------------------------------------------|
| 비공개  | 12개 |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
| 공개   | 7개  | 경찰청(정보비 제외), 관세청, 국방부(군사정보비 제외),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해양경찰청                      |
| 부분공개 | 1개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집행액 및 영수증 증빙금액만 간략 기재)                                              |

## 2. 2017년~2018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현황

- 2017년~2018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현황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한 8개 기관(경찰청,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방부, 대법원, 민주평통, 외교부, 해양경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방식은 아래와 같음.
  -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식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기관(2개 기관)
    - 경찰청, 국방부
  -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방식만으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기관(5개 기관)
    - 관세청, 국무조정실, 대법원, 민주평통, 외교부
  -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식만으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기관(1개 기관)
    - 해양경찰청
- 특수활동비 증빙현황을 공개·부분공개한 8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특수활동비 전액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아 집행하므로, 특수활동비가 편성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집행내용확인서 제출 관리 강화 등 철저한 사후 확인·관리가 필요함.
-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만 집행하는 기관 중 대법원과 외교부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음. 특히 외교부는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자체가 전무해 개선이 필요함.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폐지된 대법원과 달리 외교부는 2019년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될 예정이므로 해당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국무조정실의 경우는 집행내용확인서 제출 금액을 미표기 하였으나, 집행내용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관세청은 집행내용확인서는 모두 제출되었으나 영수증 증빙금액이 전체 지급금액(9억2,300만원) 대비 38.1%(3억5,200만원)에 불과해 영수증 증빙 관리를 강화할 필요있음.
- 경찰청은 2017년~2018년 상반기 동안 집행내용확인서가 제출된 특수활동비 집행 금액이 1억4,200만원으로, 특수활동비 현금 집행 전체 금액(10억1,400만원) 대비 14%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함. 다만 경찰청의 연도별 집행내용확인서 제출 추이를 별도로 확인한 결과, 2017년 3,100만원, 2017년 3,500만원에 불과한 집행내용확인서 제출 금액이 감사원 지침 개정 이후인 2018년 이후에는 1억700만원으로 증가해 상당한 개선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특수활동비 증빙서류 제출 현황을 공개한 8개 기관 중 특수활동비 지급신청 시 사용계획서 등 지급근거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기관은 관세청, 국방부, 대법원 등 3개 기관에

불과함. 경찰청은 해당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했고, 국무조정실, 민주평통, 외교부, 해양경찰청도 특수활동비 지급을 위한 근거자료 제출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사용계획서 제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해양경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 지급을 위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수치 현황은 공개하지 않음.

- 경찰청, 국방부는 기관의 특수활동비 지급건수와 금액, 증빙현황을 공개하면서도 정보예산에 해당하는 정보비, 군사정보비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비공개 처리함. 지난해 이들 두 기관의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이 1,000억을 웃도는 금액이었음을 감안하면, 증빙현황이 공개된 경찰청(458억1,200만원), 국방부(7억4,100만원)의 특수활동비 금액은 해당 예산의 전체 금액에 대비해 미소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6] 2017년~2018년 상반기 각 기관별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 현황

단위: 건, 천원

| N<br>O. | 기관명                                     | 구분               | 지급<br>건수 | 지급근거<br>제출 건수    | 지급금액       | 영수증 증빙<br>금액<br>(증빙율) | 집행내용<br>확인서 제출<br>금액(비율) <sup>1</sup> |
|---------|-----------------------------------------|------------------|----------|------------------|------------|-----------------------|---------------------------------------|
| 1       | 경찰청<br>(정보비<br>제외)                      | 정당채권자 또는<br>신용카드 | 부존재      | 부존재              | 44,798,000 | 44,779,000<br>(100%)  | -                                     |
|         |                                         | 현금으로 미리<br>지급    | 부존재      | 부존재              | 1,014,000  | 1,014,000<br>(100%)   | 142,000<br>(14.0%) <sup>2</sup>       |
| 2       | 관세청                                     | 정당채권자 또는<br>신용카드 | -        | -                | -          | -                     | -                                     |
|         |                                         | 현금으로 미리<br>지급    | 636      | 636              | 923,000    | 352,000<br>(38.1%)    | 923,000<br>(100%)                     |
| 3       | 국무조정실<br>·<br>국무총리비<br>서실<br>(~2018.7.) | 정당채권자 또는<br>신용카드 | -        | -                | -          | -                     | -                                     |
|         |                                         | 현금으로 미리<br>지급    | 미표기      | 미표기              | 1,585,000  | 1,585,000<br>(100%)   | 미표기                                   |
| 4       | 국방부<br>(군사정보<br>비 제외)                   | 정당채권자 또는<br>신용카드 | 7,283    | 7,283            | 631,000    | 619,000<br>(98.1%)    | -                                     |
|         |                                         | 현금으로 미리<br>지급    | 86       | 86               | 110,000    | 110,000<br>(100%)     | 107,000<br>(97.3%)                    |
| 5       | 대법원                                     | 정당채권자 또는<br>신용카드 | -        | -                | -          | -                     | -                                     |
|         |                                         | 현금으로 미리<br>지급    | 383      | 129 <sup>3</sup> | 415,115    | 415,115<br>(100%)     | 0 (0%)                                |

|   |                    |                  |       |     |                      |                    |                   |
|---|--------------------|------------------|-------|-----|----------------------|--------------------|-------------------|
| 6 | 민주평화<br>통일자문<br>회의 | 정당채권자 또는<br>신용카드 |       |     | -                    | -                  | -                 |
|   |                    | 현금으로 미리<br>지급    | 177   | 미표기 | 105,968 <sup>4</sup> | 105,968<br>(100%)  | 105,968<br>(100%) |
| 7 | 외교부                | 정당채권자 또는<br>신용카드 | -     | -   | -                    | -                  | -                 |
|   |                    | 현금으로 미리<br>지급    | 11    | 미표기 | 1,259,000            | 0 (0%)             | 0 (0%)            |
| 8 | 해양경찰청              | 정당채권자 또는<br>신용카드 | 4,110 | 미표기 | 322,914              | 317,416<br>(98.3%) | -                 |
|   |                    | 현금으로 미리<br>지급    | -     | -   | -                    | -                  | -                 |

<sup>1</sup> 집행내용확인서는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 제출하며,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sup>2</sup>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지급액 중 집행내용확인서가 제출된 금액은 2016년 3,100만원, 2017년 3,5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1월~6월 기간에는 1억700만원으로 개선됨. 2017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점검에 따른 권고,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의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요건과 절차 규정 강화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sup>3</sup> 대법원은 2017년까지 집행 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2018년도부터 모든 지급 건에 대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음.

<sup>4</sup> 민주평통 특수활동비 지급액 중 천원 이하 단위는 반올림 표기

# 특수활동비 집행 관리·감독 정보 비공개 기관

## 1.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자체 감사 여부, 증빙 현황 등 주요 비공개 현황

- 2017년~2018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현황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각 국가기관들은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그 주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 규정 중 1호~5호를 인용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가~마목 생략)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나목 생략)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018년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집행계획 비공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집행계획 비공개 기관(12개 기관)
    - 감사원,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집행계획 주요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1곳): 국가정보원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6곳):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통일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4곳): 국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5곳):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 국회, 방위사업청
    - 기타(1곳): 대통령경호처(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 국가기밀 및 개인정보 노출 우려)
- 2017년~2018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실태를 비공개 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자체감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힌 9개 기관([표3]참고)을 제외한 11개 기관 모두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비공개함. 비공개 기관은 경찰청, 감사원,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해양경찰청임.
  -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비공개한 기관 중 국가정보원, 국회,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은 자체감사 실시 여부조차 밝히지 않음.
  -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계획서, 결과보고서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3곳): 국가정보원, 과학기술부, 통일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2곳): 국가정보원, 국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3곳): 국회, 대법원, 방위사업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5곳): 감사원, 국가정보원, 법무부, 방위사업청, 국회
    - 기타(1곳): 대통령경호처(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 국가기밀 및 개인정보 노출 우려)
    - 자료 부존재(2곳): 경찰청, 해양경찰청(종합감사의 일환으로 실시하므로 특수활동비 자체감사를 위한 별도의 계획서, 결과보고서는 부존재)

- 2017년~2018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증빙현황을 비공개한 기관의 주요 비공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특수활동비 증빙현황 비공개 기관(12개 기관)
  - 감사원, 공정거래위,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 특수활동비 증빙현황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2곳):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4곳):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회, 통일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1곳): 대통령비서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3곳): 국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3곳): 감사원, 국회, 방위사업청
  - 정보부존재(1곳): 국세청(새롭게 생성·가공해야 하는 정보로 부존재)
  - 기타(1곳): 대통령경호처(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 국가기밀 및 개인정보 노출 우려)
  - 비공개 사유 제시하지 않음(2곳):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명목상으로는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실질적인 정보 자체는 공개하지 않음)

※ 정보공개를 거부한 각 기관은 복수의 비공개 사유를 제시했으므로, 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기관의 총합이 비공개 기관의 전체 수와 일치하지는 않음.

[표7]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받은 기관 중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공개를 거부한 기관의 비공개 사유

| 비공개 사유                                                                                              | 비공개한 정보 항목                                          |                              |                                  |
|-----------------------------------------------------------------------------------------------------|-----------------------------------------------------|------------------------------|----------------------------------|
|                                                                                                     | 자체지침·집행계획                                           | 자체감사 현황                      | 증빙 제출 현황                         |
| <b>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sup>1</sup></b><br>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br>과학기술정보통신<br>부, 통일부 | 국가정보원,<br>대통령비서실                 |
| <b>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b><br>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과학기술정보통신<br>부, 국가정보원,<br>국회,<br>대통령비서실,<br>외교부, 통일부 | 국가정보원, 국회                    | 과학기술정보통신<br>부, 국가정보원,<br>국회, 통일부 |
| <b>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b><br>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대통령비서실                           |

|                                                                                                                                                                                       |                                |                            |                  |
|---------------------------------------------------------------------------------------------------------------------------------------------------------------------------------------|--------------------------------|----------------------------|------------------|
| <b>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b><br><br>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국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 대법원, 방위사업청, 국회             | 국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
| <b>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b><br>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방위사업청 | 감사원, 국가정보원, 법무부, 방위사업청, 국회 | 감사원, 국회, 방위사업청   |
| <b>기타</b><br>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 위협, 국가기밀 및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로 외교적 문제 초래                                                                                                                            |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경호처           |
| <b>비공개 사유 밝히지 않음</b><br>명목상으로 ‘공개’ 처분했으나 공개청구 의도에 부합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기관                                                                                                                 | -                              |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 <b>부존재</b><br>자료 부존재로 비공개한 기관                                                                                                                                                         |                                | 경찰청, 해양경찰청                 | 국세청              |

<sup>1</sup>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6조·제12조·제14조,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지침」 제7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는 해당 정보가 비밀II급(「보안업무규정」 제4조 참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함.

## 2.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자체 감사, 증빙 현황 등 정보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

- 참여연대가 공개청구한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자체감사 실태, 증빙현황 등 정보를 비공개한 국가기관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5호의 비공개 규정 등을 사유로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각 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아래의 사유를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참여연대가 공개 요구한 정보는 특수활동비의 개별 집행금액, 집행일시, 집행처 등 구체적인 내역이 아닌, 특수활동비 집행의 내부통제 규정, 전체적인 통계자료 등 일반 정보임. 따라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경비 집행의 목적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더욱이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껌껌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점을 감안하면, 해당 예산이 제대로 관리·감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에 해당함.
-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은 특수활동비의 집행이라는 행정활동의 일반적 기준의 의미를 가지며, 행정기관이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정사항을 지시하는 “지시문서”의 성격을 띠고 있음. 지시 문서에 속하는 지침/규칙/훈령/예규 등은 비공개 대상이 아님. 이를 전제로 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함(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등).
-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계획과 감사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특수활동비 예산의 모든 구체적 집행내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특수활동비 목적 외 사용 등 위법·부당한 지출을 어떻게 감사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과 그 결과를 청구한 것임. 만약 해당 정보의 공개로 일부 개별 사례가 드러난다고 해도, 예산의 위법·부당 지출의 사례까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잘못된 사례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유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함.
- 특수활동비 증빙현황도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통계 수치에 불과해 공개해도 예산 집행의 목적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더욱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 평가 결과’ 등은 애초에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임. 따라서 시민이 국가기관의 예산 집행·관리 현황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계 자료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

특수활동비 관리·감독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됨. 그러나 2018년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점검은 확인되지 않음.

- 참여연대가 특수활동비 편성 기관 20곳에 대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자체감사 및 부정사용 적발 현황, 증빙서류 제출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각 정보에 대해 11개~12개의 기관이 비공개 처리함. 특수활동비 통제 규정, 관리·감독 현황 일반통계 등은 공개해도 예산집행의 목적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비공개로 인해 예산 관리의 투명성이 훼손됨.
  - 경찰청과 국방부는 증빙서류 제출 현황을 공개했으나 국회 정보위원회 심의를 받는 정보예산 부분은 비공개함. 이들 두 기관의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1,000억원을 넘는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경찰청(458억1,200만원), 국방부(7억4,100만원)가 공개한 증빙현황은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함.
- 다수 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에 2017년 감사원 점검 후 권고사항과 2018년 기재부 지침의 개정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국무조정실, 민주평통 등 일부 기관은 과거의 지침·집행계획과 큰 차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함.
-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 응답한 15개 기관 중 특수활동비를 자체감사하는 기관은 6개에 불과하고, 9개 기관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체감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감사여부를 비공개한 5개 기관 역시 내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특수활동비 증빙현황을 공개한 기관 8개 기관 중 2곳(대법원, 외교부)이 현금으로 미리 지급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음에도 집행내용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5개의 기관(경찰청, 국무조정실, 민주평통, 외교부, 해양경찰청)은 특수활동비 지급 전 근거자료가 제출되고 있는지 현황을 밝히지 않아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심됨.
- 2018년 기재부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예산을 요구하는 각 중앙부처의 장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하지만, 2019년도 예산안이 발표된 지난 2018년 8월 29일 이후에 감사원의 점검 여부 및 그 결과가 발표되거나 확인된 바 없음.

## 2.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강화 및 그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개선 요구됨

-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점검 외에도 각 기관의 자체 지침·집행계획에 특수활동비 집행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기재부 지침 등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수활동비의 급여성 지급을 막기 위해, 특수활동비 지급요청시 반드시 구체적 사유가 명시된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하고, 특수활동비 집행 후에도 증빙 및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사원 지침을 개정할 수 있음.
-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자체감사 결과, 증빙현황 등 예산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정보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의 투명성 확보,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되어야 함.
-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 계획 마련, 증빙서류 제출 현황 등 각 기관의 내부통제 실태가 기재부 지침, 감사원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정기 조사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원이 2017년 집행실태 점검 수준을 넘어 특수활동비 부정집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조사·감사를 실시해야 함.
- 경찰청, 국방부 등 기관에 편성되는 정보예산은 해당 기관의 예산으로 편성됨에도, 그 편성과 관리권한은 해당 기관이 아닌 국가정보원에게 있어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각 기관에 정보예산으로 편성되는 특수활동비는 전액 해당 기관의 책임 하에 통제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예산심의도 정보위원회가 아닌 소관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전환해야함. 끝.

# 별첨 (기획재정부, 감사원 지침)

## 1.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3. 특수활동비(230목)

##### 3-1. 적용범위

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3-2. 세부지침

###### 가. 집행원칙

○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나. 집행투명성 제고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범위, 집행승인절차, 집행방식, 증빙방법 등 집행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 다. 집행방법

○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단순한 계도, 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 조사활동 등

######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별첨>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

’17.11.16.개정, ’18.1.1.시행)」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에는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 시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집행실태 점검결과 환류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도 예산 요구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 2.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2017.11.16.)

###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2017. 11. 16. 결 산-2404】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불일 채권자의 영수증서(계산증명규칙 제27조 제2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 시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

3.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  
(2017년~2018년 상반기)**

발행일 2018. 9. 27.

발행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장유식 변호사)

담당 신동화 간사 02-723-5302 hwa@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http://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